

[서식 예]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(식품접객업)

소 장

원 고 O O 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-OOO)

피 고 △△시 △△구청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〇〇. 〇. 〇.자로 한 식품접객업소 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피고로부터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서 "☆☆"이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을 경영해 왔는데, 피고는 원고가 대중음식점의 조리실로 사용해오고 있는 부분이 무허가건물임을 이유로 위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.
- 2. 그러나 무허가건물을 제외한 유허가건물만으로는 식품위생법상의 대중음식점 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때라 할지라도 시설개수명령이나 영업정지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영업취소처분을 한 것은 그 행정처분이 원고의 기득권을 침



해하는 것이므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취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.

3.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○○. ○. ○..자로 한 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 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소를 제기합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식품접객업소 허가취소통보

1. 갑 제2호증

영업허가증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각 1통

1. 소장부본

1통

1. 납부서

1통

2000년 0월 0일

원 고 ㅇㅇㅇ (인)

○ ○ 행 정 법 원 귀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4조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□□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□□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6조)		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,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 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 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 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